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5
----------	-----

2022년 9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2년 8월 29일  
다. 회부일 : 2022년 9월 2일  
라. 상정일 :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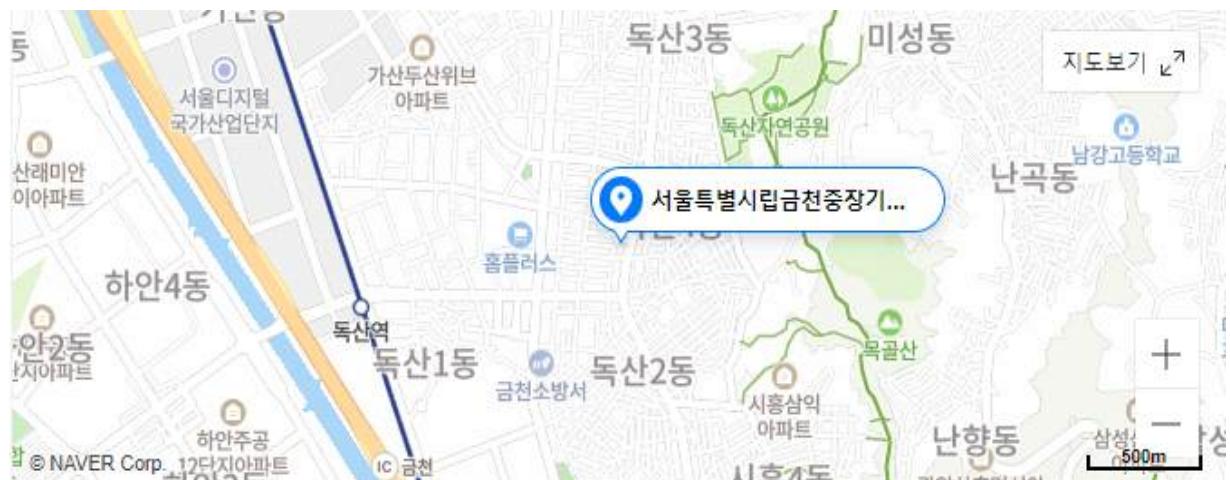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가정 밖(위기) 여성 청소년 보호 및 가정과 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 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 취업·근로 및 자립준비 지원 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 기관·단체 연계 활동 지원
  -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16

- 시설규모 : (대지)  $106.2m^2$ , (연면적)  $115.17m^2$
- 주요시설 : 숙소, 상담실, 사무실 등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3년(2023.1.1.~2025.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44백만원(20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68백만원, 운영비 61백만원, 사업비 11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네트워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16
- 시설규모 : (대지) 106.2m<sup>2</sup>, (연면적) 115.17m<sup>2</sup>
- 주요시설 : 숙소, 상담실, 사무실 등
- 위탁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취업·근로 및 자립준비지원 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 기관·단체 연계 활동 지원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기간 : 3년(2023. 1. 1.~2025.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344백만원(2022년)
  - 인건비 168백만원, 운영비 61백만원, 사업비 11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는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시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초 동의 후 기간에 관계 없이 재위탁을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 ⑤ (생략)

- ※ 재위탁 및 재계약의 정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또는 가출·가출정후 청소년 등 포함)의 조기 발견을 통해 청소년범죄 또는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지, 문화활동,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고 있음.

### ※ 청소년쉼터의 구분

- 쉼터 중 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차량)으로 나눌수 있고,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복귀를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 단기 및 중·장기(자립지원관 포함)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기는 가정복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쉼터는 가정붕괴, 가정폭력 또는 학대, 근친 성범죄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청소년쉼터의 종류 〉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년 이내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li> <li>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li> <li>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li> <li>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li> <li>의식주 등 보호 서비스 제공</li> <li>일시·중장기 쉼터와 연계</li> <li>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li> </ul>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및 주요도심)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

-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1년 1회 연장, 최장 4년)의 보호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법령은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소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9~24세)은 보호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 쉼터 보호기간 4년을 넘은 입소생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게 된다하더라도 정원 초과를 이유로 다른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 조제2호에 규정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지침에 달리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7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 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 ※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청소년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중장기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아직 개소 운영되지 않는 시도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시까지 한시적으로 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출처 :청소년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513P 발췌)

### 〈 서울특별시 쉼터 현황 〉

	시설명	유형	소재지	입소정원		직원 현황		
				남	여			
합 계				218		130		
				102	116			
시립 (13)	용산일시	일시	용산구 만리재로	5	5			
	드림일시	일시	강남구 삼성동	10	10			
	강북드림	일시	강북구 수유동	10	-			
	서북이동(여우별)	이동	청소년 밀집지역(서북)	7	7			
	서남이동(우리별)	이동	청소년 밀집지역(서남)	5	5			
	동북이동(더작은별)	이동	청소년 밀집지역(동북)	5	5			
	동남이동(작은별)	이동	청소년 밀집지역(동남)	7	7			
	신림단기	단기	관악구 신림동	20	-			
	금천단기	단기	강남구 삼성동	-	20			
	망우단기	단기	중랑구 망우동	-	20			
	신림중장기	중장기	관악구 난곡동	10	-			
	금천중장기	중장기	금천구 독산동	-	10			
	은평중장기	중장기	은평구 불광동	-	10			
구립 (2)	강남쉼터	단기	강남구 수서동	15	-	7		
	은평쉼터	일시	은평구 갈현동	-	10			
민간 (2)	강서쉼터	단기	강서구 화곡동	8	-	4		
	어울림쉼터	중장기	강서구 화곡동	-	7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이하 ‘본 쉼터’)는 가정 밖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 상담, 보호, 가정복귀 및 자립지원(취업·근로 지원 등), 진로지도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임.
- 본 쉼터는 여성청소년 8명이 머무를 수 있는 지하1층(창고), 지상 2층의 시설로, 3개의 생활실, 식당,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명의 직원이 총 3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중장기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목적사업, 상담사업, 자립지원사업 등 총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시립금천중장기쉼터의 시설현황 〉

(단위 : m<sup>2</sup>)

구분	시설명	면적
	총계	115.17
지하1층	창고	11.5
지상1층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주방, 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거실	54.74
지상2층	생활실1·2·3, 거실, 화장실, 샤워실	48.96

-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청소년단체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활용과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가정·사회로 복귀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다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동의안(이하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등으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보이며,

- 공공서비스 대상설정의 적정성(수혜대상이 본 센터 설립목적에 맞게 특정 여부) 여부, 공공서비스의 지속성(공공서비스 대상의 상황과 사회적 여건과 변화추이 고려)이 필요한지 여부, 서비스 중단 시 과급효과(서비스 대상의 피해, 사회적 피해, 공공 서비스 중단 시 대체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쉼터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으로 사료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청소년들에게 가정복귀 및 사회진출 등의 교육·상담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특히 본 사무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본 센터와 관련한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보호서비스 제공 등으로 위기에 개입하여, 상담부터 보호 및 자립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노하우를 지닌 민간기관(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청소년쉼터를 서울특별시 직영으로 운영하면 공공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 위기상담·자립지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얻는 실익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심신의 안정, 이용자의 만족도, 안전한 생활제공, 성공적인 사회진출이 핵심이라고 하겠음.
- 다만,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추진하는 이유, 명칭의 적정성,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은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 2년을 포함 최대 5년까지 위탁할 수 있으나,
    - 본 센터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이하 ‘한국청소년지원 네트워크’)'는 수탁 후 3년이 경과했고, 재계약으로 수탁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운영평가 결과 70점 이하의 점수로 재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재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종합성과평가(위탁기간 종료시)와 운영평가(매년시행)가 중복되는 연도에는 민간위탁기관의 업무집중, 평가의 효율성 등으로 고려하여 운영성과평가로 일원화하여 평가하고 있음.

#### 〈 금천청소년증장기쉼터의 민간위탁 현황 〉

- 2014.01.01.~2014.12.31. : 1년, 공모,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5.01.01.~2017.12.31. : 3년, 공모,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8.01.01.~2019.12.31. : 2년,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2020.01.01.~2022.12.31. : 3년, 공모,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 본 쉼터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네트워크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략, 위탁사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대외협력, 사업실적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시 적정한 청소년단체가 수탁할 수 있도록 검증 및 심사과정의 강화와 함께 세심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 2021년도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의 운영평가 결과 〉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점
	총 점	100.00	0.00
1. 운영기반	1.1. 운영전략 관리	10.00	6.46
	1.2. 조직 및 인력 관리	12.00	10.00
	1.3. 재정 및 자원 관리	13.00	12.03
2. 사업운영	2.1. 프로그램 개발	5.00	3.00
	2.2. 사업운영 관리	15.00	15.00
	2.3. 대외협력	10.00	5.00
3. 사업성과	3.1. 사업운영 실적	15.00	4.50
	3.2. 지역사회 기여도	10.00	4.00
	3.3. 만족도 관리	10.00	8.80
※ 가·감점	A. 가점	5.00	3.00
	B. 감점	-5.00	-2.00

### 〈 2021년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평가 결과 중 ‘총평’ 〉

- 쉼터는 정책적 분석 등의 환경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정량적 목표 설정·제시를 통해 상시적 이해점검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을 통하여 중장기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쉼터로의 운영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시설 홍보 노력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 〈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해야 하는 경우 〉

###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 ③ 위탁기간 중 지도 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처 : 202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둘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침 또는 기준 등으로 삼을 수 있는 '청소년사업 안내'를 발행하고 있으며,
  - 가정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들이 도움을 구하고자 공공 청소년보호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악용하여, 유사 시설명을 사용하여 청소년을 약취·유인 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이 아니면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별, 시설별, 상이한 청소년 쉼터의 명칭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 본 쉼터의 명칭은 일원화된 명칭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어 위기 청소년들의 범죄 대상화를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평생교육국의 시립쉼터 명칭변경 추진현황

- 평생교육국은 시립쉼터의 명칭 변경을 위한 실무(명칭 변경에 필요한 사전·제반 절차 이행 등)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리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완료 후 명칭변경의 최종단계인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음.

### 〈 청소년 쉼터의 명칭 〉

#### 3. 청소년쉼터 명칭

- 시설별로 상이한 청소년쉼터 명칭 체계를 일원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8조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쉼터임을 명시
- 명칭표시방법 : 지역 - 성별 - 유형 - 청소년쉼터
- 청소년쉼터 협판 신규 및 변경제작시 기본 가이드라인
  - 문구는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 지자체 지원' 형태로 표기하고, 로고는 외부에서 여가부, 지자체 지원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
  - 기존 설치 시설의 경우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변경 권장

출처 :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사업 안내, 192-193P 발췌 및 요약

### 〈 서울특별시 청소년보호시설의 현행 명칭과 일원화한 명칭 비교 〉

현행 청소년쉼터 명칭	기준에 따른 일원화 후 명칭(안)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u>서울시립금천여자단기</u> 청소년쉼터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u>서울시립금천여자중장기</u> 청소년쉼터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u>서울시립신림남자단기</u> 청소년쉼터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u>서울시립신림남자중장기</u> 청소년쉼터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u>서울시립망우여자단기</u> 청소년쉼터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u>서울시립용산일시</u> 청소년쉼터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u>서울시립서북/서남일시</u> 청소년쉼터(이동형)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u>서울시립동북/동남일시</u> 청소년쉼터(이동형)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u>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u> 청소년쉼터

- 셋째, 본 센터는 중·장기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생활필수품과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쉼터는 중·장기쉼터로 가정복귀 보다는 자립지원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은 입소생 전부가 아닌 일부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대상의 설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쉼터의 치료비는 1인당 1개월에 1만 2천 5백원 수준으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중·장기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붕괴, 가정폭력, 학대, 근친성 범죄 등으로 가정에 복귀할 수 없는 이유가 뚜렷한 청소년들로 정신적 치료 등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치료비 등의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보호사업 및 자립지원 사업의 산출기초 〉  
(단위: 원)

	2022년	산출기초	1인당 1개월비용
<b>중장기보호사업</b>			
약품구입비	180,000	30,000×6회	1,875
치료비	1,200,000	100,000×12월	12,500
용돈 및 교통비	4,800,000	50,000×8명×12월	50,000
생활용품지급	1,920,000	20,000×8명×12월	20,000
미용	720,000	15,000×8명×6회	7,500
피복구입비	2,880,000	30,000×8명×12월	30,000
365플러스 도서구입비	160,000	80,000×2회	1,667
문화가 있는 날 체험활동비	1,000,000	50,000×10명×2회	10,417
<b>자립준비지원사업</b>			
진로학습·자격검정료·시험응시료	280,000	70,000×4명	2,917
교재 지원비	280,000	70,000×4명	2,917
학원 지원비	800,000	200,000×4명	8,333
학교 활동비	160,000	80,000×2회	1,667

- 넷째,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수탁단체에 포괄적이며 모호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거나, 극히 단순화한 ‘위탁사무’만을 제시하여,
  - 수탁단체가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을 감안한 역할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을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시설의 운영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본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선정,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재능과 능력 및 처한 여건에 따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95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2.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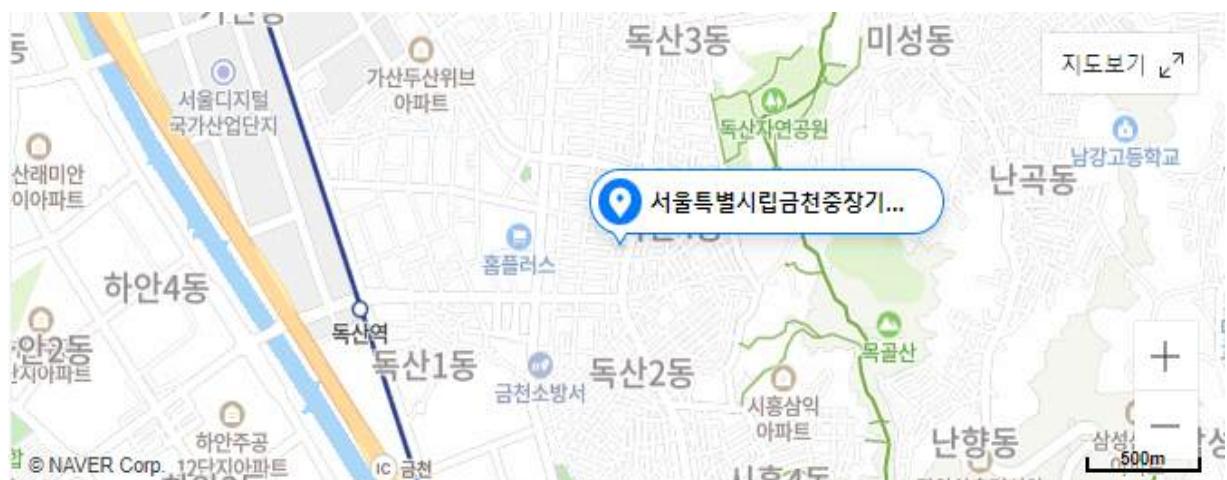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가정 밖(위기) 여성 청소년 보호 및 가정과 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 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 취업·근로 및 자립준비 지원 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 기관·단체 연계 활동 지원
-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16
- 시설규모 : (대지)  $106.2 m^2$ , (연면적)  $115.17 m^2$
- 주요시설 : 숙소, 상담실,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3. 1. 1.~2025.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44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68백만원, 운영비 61백만원, 사업비 11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황미연 (☎ 2133-4128)